

보 도 자 료

이 자료는 11월 일()부터
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시스템트레이딩 감독방향

<주요 내용>

□ 감독 필요성

- 온라인거래와 데이트레이딩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트레이딩(System Trading)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나,
 - 시스템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나 위험에 대한 사전고지 미비,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관한 감독방안을 준비하고 있음
- * 시스템 트레이딩 : 투자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임의의 조건을 부여하면 부여된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 발생시 컴퓨터가 매도. 매수시점에 대한 신호(signal)를 보내거나 나아가 자동주문까지 내주는 시스템을 통칭

□ 향후 감독방향

※ 아래의 사항에 관한 감독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

○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제공시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화

- 투자수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, 내장된 함수(기술적 지표)의 이론적 근거 및 동 이론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등

○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대상을 제한

- 투자경험 및 투자지식이 부족한 고객에 대하여는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

○ 과장광고 금지

- 투자실적의 발취광고 금지, 안정적 수익실현이라는 문구사용 금지 등

<붙임> 시스템트레이딩 현황 및 감독방향

자료생산처 :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팀(전화 : 3786-8273)

금융감독원 공보실(전화 3771-5788 ~ 5791)

※ 금융감독위원회,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fsc.go.kr> 과 www.fss.or.kr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

<붙임>

시스템트레이딩 현황 및 감독방향

1. 시스템트레이딩 도입배경

□ 사이버거래시스템의 발전

- 주식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매매체결이 가능한 HTS(Home Trading Service)등 컴퓨터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사이버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
- 증권사의 사이버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수준도 종래 단순투자정보에서 개별적인 투자자문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

□ 시장환경의 변화 및 증권업계 경쟁심화

- 시장의 지속적 침체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시장 평균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새로운 매매기법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
- 대형증권사의 시장지배력 심화와 전문적인 영업을 표방하는 신설 증권사의 등장으로 중.소형 증권사의 입지가 축소됨에 따라 중.소형 증권사들이 틈새시장 선점차원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

2. 시스템트레이딩 현황

□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된 자동화 주문시스템

- 투자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한 채 사전에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매매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또는 주어지는 각종 분석차트 등을 혼합하여 임의의 조건을 생성하고,

- 컴퓨터가 주어진 조건에 충족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도.매수 시점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거나 나아가 자동적으로 주문까지 내주는 시스템

□ 데이트레이딩 등과 연계

- 본래 가격등락폭이 큰 장세에서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된 측면이 있으나, 지금은 데이트레이딩과 연계되어 초단기 투자수단으로 변질
- 자동매매주문이 가능하므로 설정조건과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매매주문이 가능

□ 중.소형 증권사의 틈새시장 선점수단으로 활용

- 현재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는 중.소형 증권사를 위주로 각사의 HTS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증권관련 정보제공업체인 팩스넷에서도 유료서비스를 개시
- 최근 격심한 수수료인하.사이버거래의 급증 등으로 인한 증권업계의 경쟁심화의 결과로써 중.소형 증권사의 자구책차원에서 시스템트레이딩을 적극 도입

※ 일부 대형증권사의 경우는 단순 조건검색서비스 제공

- HTS 고객에 대하여 고객이 선정한 종목에 대하여 각종 기술적 지표 등 단순조건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중이며 각 사별로 제공되는 기술적 지표의 수는 상이하나 시스템트레이딩과 같은 개별종목에 대한 매수.매도신호의 제공은 하지 않고 있음

<참고>

각 증권사별 시스템트레이딩 현황

- 3개 증권회사(교보, 신한, 제일투신)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 프로그램개발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중
 - 교보증권은 자동매매주문이 가능하며 약 3,500여 등록계좌가 이용중
 - 신한증권은 사이버지점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1월1일부터 자동매매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
 - 제일투신증권은 자동매매주문이 가능하며 주로 선물고객이 이용중 (일거래비중의 5%를 차지)

- ※ 인터넷 증권정보제공업체인 팩스넷은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고 매매신호서비스를 제공중

구분	교보증권 ¹⁾	팩스넷 ²⁾	신한증권 ³⁾	제일투신증권 ⁴⁾
프로그램명칭	오토스탁	팩스매매신호	시스템트레이딩프로	에스트레이더
설치방식	홈페이지/CD	CD	홈페이지	CD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매수량·비율조건 등 간단한 매매조건설정만 가능 ○ 기술적 지표에 의한 매매조건설정은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50개에 대한 기간별 매매신호서비스 ○ 유료서비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장된 기술적 지표로 매매신호확인 가능 ○ Stop Loss 기능 ○ 개방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표개발 및 분석 기능(자체함수내장) ○ 네가지 Stop Loss 기능 ○ 개방형(사용자가 매매조건개발가능)
자동매매(주문)	가능	불가능	가능	가능
비용	없음	월99만원	없음	없음
이용현황	등록계좌 3,395개 (활동계좌 739개)	약 2,000여명		일거래중 5%비중

- 주 : 1) 교보증권은 이외에도 40여개의 기술적 지표 중에서 투자자 자신에게 알맞는 지표를 선정하여 매수매도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손절매 기능도 가능한 앵커스팟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
- 2) 팩스넷은 향후 다양한 요금체계를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(예를 들어 개별종목에 대한 매매신호서비스 이외에 업종지수별 매매신호서비스)
- 3) 11월1일 신규서비스 개시. 이전에는 e-사인이라는 서비스를 사이버지점에서만 제공
- 4) 제일투신증권은 상설교육센터를 열어서 투자자를 상대로 시스템트레이딩 교육을 실시

3. 시스템트레이딩의 문제점

□ 데이트레이딩의 조장 문제

- 증권사 등에서는 광고를 통하여 안정된 수익률, 사용의 용이성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직·간접적으로 데이트레이딩에 적합한 투자기법이라고 선전
- 비록 투자자가 데이트레이딩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택하는 조건과 시장변동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트레이딩과 마찬가지로 매매회전율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

□ 제공되는 기술적 지표 등의 적합성 여부 검증 문제

-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트레이딩의 각종 기술적 지표가 증권 투자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지, 프로그램의 안전성은 어떠한지, 과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써 미래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검증절차가 부족

□ 과장광고의 문제

- 현재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등은 시스템트레이딩을 통한 투자시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고, 심지어 장세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을 때에도 시스템트레이딩은 안정된 수익을 가져온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
- 그러나 시스템트레이딩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된 결과로 미래에도 연속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, 모의투자결과나 몇 번의 실제투자 결과만을 가지고 안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것은 과장광고의 소지가 있음
- * 투자대회 개최시의 시스템트레이딩을 이용한 평균수익률은 거래비용(수수료, 증권거래세, 시장충격비용-동일한 매매조건하에서는 동일한 주문이 나옴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화)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률임

□ 위험고지의 문제

-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한 투자가 반드시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특성상 지속적인 상승장세나 하락장세에서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
- 선택하는 조건에 따라서는 고객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과다 거래를 하게 되고 수익여부와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증권사 측에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시스템트레이딩에 수반하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함

4. 개선방안

- 시스템트레이딩과 투자지원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증권사의 對 투자자 교육, 소프트웨어 광고 등과 관련한 방법.절차상의 감독 방안 마련

①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판매시 위험고지 의무화

- 시스템 트레이딩 소프트웨어 판매시 반드시 투자수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, 내장함수의 이론적 근거 및 동 이론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

②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대상의 제한

- 투자경험 및 투자지식이 부족한 고객에 대하여는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

③ 과장광고의 규제

- 현행 증권사의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광고에 대한 협회의 규제 또는 심의를 강화
 - 투자실적의 일부 발췌광고, 안정적 수익실현이라는 문구 사용 금지 등

※ 투자자문업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

○ 증권회사가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

- 고객에 대한 유가증권의 가치에 대한 투자조언업무가 증권업의 범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동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증권업 영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⇒ 투자자문업이나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음

○ 비증권회사가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(판매)할 경우

-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(판매)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우리 원에 신고하여야 함

* 투자자문업 :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·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(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제1호)

**유사투자자문업 :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가능한 간행물·통신물 또는 방송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 업무(증권거래법 제70조의8,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)

5. 요 조치사항

□ 시스템트레이딩 규제방안에 대하여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조치로 보완

- 우리 원 관련규정에 반영(2000. 12월중)
- 협회의 광고심의기준 강화(금년중)